

의안번호	제 118 호
의 결 연 월 일	2019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19년 1월 9일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8
----------	-----

제출연월일: 2019. 1. 9.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 1. 제안이유

- 업무 전문성 제고 및 효율적인 교육정책 수행을 위해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의 기구를 정비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 및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부교육감 명시 조항 삭제

-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1조에 보조기관인 부교육감에 대한 조항이 있으므로 조례상에 명시된 조항 삭제(안 제5조)

#### 나. 본청 기획국 신설(안 제5조의3)

- 신설 기획국장 분장사무 명시 및 교육국장·행정국장 분장사무 조정

#### 다. 직속기관 명칭 변경 및 기관별 특화된 전문기관으로의 기반 조성을 위한 기능 조정

- 기관명칭 변경

-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 → 충청북도자연과학교육원
- 충청북도중앙도서관 → 충청북도백곡교육도서관
-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 → 충청북도교육문화원
- 충청북도교육정보원 →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
- 충청북도충주학생회관 → 충청북도중원교육문화원
- 충청북도학생해양수련원 → 충청북도해양교육원

- 분원(관) 신설

-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 북부분원
- 충청북도학생수련원 제천분원, 제천안전체험관, 옥천분원

- 충청북도국제교육원 중부분원

○ 분원(관) 명칭 변경

- 충청북도중앙도서관 미원도서관 → 미원교육도서관

-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 학생교육문화관 → 진천문화관

- 충청북도충주학생회관 중원도서관 → 중원교육도서관

- 충청북도학생해양수련원 제주수련원 → 제주분원

**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조정**

○ 직속기관 전문연수 기능 강화에 따라 소속기관 재배치

- 충청북도학생수련원 영동휴양소 → 영동교육지원청 소속기관

- 충청북도학생수련원 쌍곡휴양소 → 괴산중평교육지원청 소속기관

○ 지역 도서관 교육기능 강화를 위해 도서관 명칭에 ‘교육’ 삽입

**마. 직속기관 분원(관) 신설 등에 따른 [별표 1] ~ [별표 12] 정비**

**3.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합의되었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2018. 12. 7. ~ 2018. 12. 27.

3)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없음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5조의2 중 “교육국”을 “기획국, 교육국”으로 한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기획국) ① 기획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교육행정의 기획·조정 및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2.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교육정책의 개발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행정권한 이양에 관한 사항
5. 학교업무 경감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교육공동체와의 소통에 관한 사항
7. 예산의 편성·운영 및 재정계획에 관한 사항
8. 학교회계 예산의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9. 법제 업무 등에 관한 사항
10. 학교체육 및 체육행사에 관한 사항
11.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12. 학교보건에 관한 사항
13.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14. 교원단체·지방공무원단체 및 공무원 복리에 관한 사항
15. 교권보호에 관한 사항

- 16. 교육공무직원 인사·노무관리 총괄에 관한 사항
- 17. 교육공무직원 지원·관리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 18.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19. 소관 직속기관에 대한 지원과 운영지도

제6조제1항제5호 중 “자격·인사·교육·복리”를 “자격·인사·교육”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과학”을 “과학, 수학, 정보, 생태환경”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직속기관”을 “소관 직속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9호 및 제20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21호 및 제2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1. 융합, 영재, 발명교육에 관한 사항
- 22. 장학금 및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제7조제1항제12호 중 “인사·교육·복리”를 “인사·교육”으로 하고, 같은 항 제19호 중 “이양 및 위임”을 “위임 및 위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22호부터 제2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25호 중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의회 및 지방교육행정협의회”로 하며, 같은 항에 제26호부터 제2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6. 평생교육의 진흥
- 27. 평생교육시설 및 학원의 설립·폐지 및 운영 지도
- 28. 공익법인의 설립·해산 및 운영지도

제3장제1절의 제목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을 “충청북도자연과학교육원”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조사하고, 교육현장 지도와 교육 자료를 개발하며 과학·수학·생태환경교육”을 “과학·수학·영재·생태환경교육”으로,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를 “충청북도자연과학교육원(이하 “자연과학교육원”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연구원”을 “자연과학교육원”으로 한다.

제9조 중 “연구원”을 “자연과학교육원”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구원장”을 “자연과학교육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과학·수학·발명·생태환경교육”을 “과학·수학·융합·영재·발명·생태환경교육”으로, “자료 개발·보급”을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발명”을 “융합, 발명, 영재”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연구원”을 “자연과학교육원”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공무원”을 “공무원·직원”으로 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분원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분원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장제2절에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분원) 연수원에 두는 분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장제3절의 제목 “충청북도중앙도서관”을 “충청북도백곡교육도서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충청북도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를 “충청북도백곡교육도서관(이하 “백곡교육도서관”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서관”을 “백곡교육도서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도서관”을 “백곡교육도서관”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서관장”을 “백곡교육도서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독서교육 및 도서관”을 “교과교육(국어·한문), 독서·인문교육, 학교도서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도서관”을 “백곡교육도서관”으로 한다.

제16조의2 중 “도서관”을 “백곡교육도서관”으로 하고, “별표 1과”를 “별표 2와”로 한다.

제3장제4절의 제목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을 “충청북도교육문화원”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을 “충청북도교육문화원”으로 한다.

제19조제2호 중 “학생문화”를 “교육문화”로, “등을 위한”을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교직원 연수에 관한 사항

제19조의2 중 “별표 2와”를 “별표 3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학생들의 진취적 기상을 신장하고, 인격을 도야하며, 애국애족하는 학생상을 정립하고, 교직원의 후생·복지를”을 “수련활동 등을 통해 학생들의 발달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고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청소년육성과 교직원의 복지증진을”로 한다.

제22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학생안전체험에 관한 사항

제22조의2 제목 “(야영장 및 휴양소)”를 “(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야영장 및 휴양소”를 “분원”으로, “별표 3과”를 “별표 4와”로 한다.

제23조제2항 본문 중 “진천군 문백면 농다리로 536-43”을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53”으로 한다.

제25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외국어 교육 관련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제26조제2항 중 “별표 7”을 “별표 6”으로 한다.

제3장제9절의 제목 “충청북도교육정보원”을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교원의 정보화 연수”를 “교육정책 연구”로, “이러닝”을 “정보교육”으로, “진흥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를 “지원

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이하 “연구정보원”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보원”을 “연구정보원”으로 한다.

제33조 중 “정보원”을 “연구정보원”으로 한다.

제34조 중 “정보원장”을 “연구정보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8호 및 제9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교육정책 연구에 관한 사항
2. 현장연구 및 조사

제34조제7호(중전의 제3호) 중 “정보관련”을 “정보 관련”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연구학교 및 교육실습 협력학교 지정·운영

제34조제6호(중전의 제2호) 중 “정보화 교육”을 “정보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교육정보 종합 서비스”를 “인정도서 개발·심사·심의·조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중전의 제6호) 중 “정보원”을 “연구정보원”으로 한다.

제3장제10절의 제목 “충청북도충주학생회관”을 “충청북도중원교육문화원”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법 제32조 및 「도서관법」 제27조에 따라 정보·문화 교육센터로의 기능 수행 및 청소년의 교양증진, 소질개발, 정서순화 등 문화·예술·교육에 기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중원교육문화원(이하 “중원교육문화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5조제2항 본문 및 같은 항 단서 중 “충주학생회관”을 각각 “중원교육문화원”으로 한다.

제36조 제목 “(관장)”을 “(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충주학생회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을 “중원교육문화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분관장은 관장”을 “분원장은 원장”으로, “분관”을 “분원”으로 한다.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충주학생회관장”을 “중원교육문화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2호, 제8호 및 제9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5. 독서의 생활화 및 평생교육의 주취 또는 장려

제37조제9호(중전의 제6호) 중 “충주학생회관”을 “중원교육문화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7. 독서교육·인문교육·학교도서관 관련 연수에 관한 사항

제37조의2 제목 “(분관)”을 “(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충주학생회관에 두는 분관”을 “중원교육문화원에 두는 분원”으로 하며, “별표 8”을 “별표 7”로 한다.

제3장제14절의 제목 “충청북도학생해양수련원”을 “충청북도해양교육원”으로 한다.

제46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법 제32조 및 청소년기본법 제18조에 따라 해양수련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필요한 인성과 역량을 함양하고, 교직원의 연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충청북도해양교육원(이하 “해양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6조의2제2항 중 “해양수련원”을 “해양교육원”으로 한다.

제46조의3제1항 중 “해양수련원”을 “해양교육원”으로 한다.

제46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련원장”을 “해양교육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해양수련원”을 “해양교육원”으로 한다.

제46조의5 중 “해양수련원”을 “해양교육원”으로 한다.

제46조의8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진학상담 및 진학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제46조의11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전환교육 지원

제47조 중 “교직원복지회관을”을 “교직원복지회관, 휴양소를”로 한다.

제48조제4항 중 “별표 10과”를 “별표 9와”로 한다.

제49조제3항 중 “별표 11”을 “별표 10”으로 한다.

제51조제3항 중 “별표 12와”를 “별표 11과”로 한다.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휴양소) ① 교직원의 자질 향상과 후생·복지증진을 위하여 휴양소를 둔다.

② 휴양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관할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휴양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2와 같다.

별표 1부터 별표 12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장제2절(제12조제2항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제5절(제22조의2)의 개정규정 중 제천분원 관련 부분은 2019년 9월 1일부터, 옥천분원 관련 부분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충청북도학생해양수련원”을 “충청북도해양교육원”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충청북도중앙도서관,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 충청북도학생수련원, 충청북도충주학생회관, 충청북도학생해양수련원”을 “충청북도백곡교육도서관, 충청북도교육문화원, 충청북도학생수련원, 충청북도중원교육문화원, 충청북도해양교육원”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 충청북도충주학생회관”을 “충청북도교육문화원, 충청북도중원교육문화원”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및 기관명란 중 “충청북도중앙도서관”을 각각 “충청북도백곡교육도서관”으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및 기관명란 중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을 각각 “충청북도교육문화원”으로 한다.

별표 4의 제목 및 기관명란 중 “충청북도충주학생회관”을 각각 “충청북도중원교육문화원”으로 한다.

별표 4의2의 제목 및 기관명란 중 “충청북도학생해양수련원”을 각각 “충청북도해양교육원”으로 한다.

별표 4의2 제1호 중 “수련원장”을 “해양교육원장”으로 한다.

별표 4의3의 제목 및 기관명란 중 “충청북도학생해양수련원”을 각각 “충청북도해양교육원”으로 한다.

별표 4의3 제1호 중 “수련원장”을 “해양교육원장”으로 한다.

②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행정지원과장(단,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국장)”을 각각 “행정과장(단,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은 행정국장)”으로 한다.

③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가등급의 기관명란 중 “충청북도학생수련원”을 “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으로 한다.

별표 다등급의 기관명란 중 “(제천야영장)”을 “(제천분원)”으로 한다.

별표 라등급의 기관명란 중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을 “충청북도국제교육

원”으로 한다.

④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기획관”을 “정책기획과장”으로, “체육보건안전과장”을 “학교자치과장”으로 한다.

⑤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기획관”을 “기획국장”으로 한다.

⑥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과학국제문화과장”을 “미래인재과장”으로, “충청북도교육정보원 정보기획부장”을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 정보교육부장”으로 한다.

⑦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부교육감,”을 “부교육감, 기획국장,”으로, “위원은”을 “위원은 기획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지원과장(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국장)”을 “교육과장(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은 교육국장)”으로, “행정지원과장(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과장(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은 행정국장)”으로, “행정지원과 총무담당”을 “행정과 총무팀장”으로 한다.

⑧ 충청북도교육청 교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교육복지과장”을 “학교자치과장”으로 한다.

⑨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기획관”을 “기획국장”으로 한다.

⑩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기획관”을 “기획국장”으로 한다.

⑪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기획관”을 “기획국장”으로 한다.

⑫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기획관”을 “기획국장”으로, “충청북도교육정보원장”을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으로 한다.

⑬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기획관”을 “기획국장”으로 한다.

⑭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중등교육과장”을 “학교혁신과장”으로 한다.

⑮ 충청북도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행정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별표 1]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 분원의 명칭과 위치(제13조의2 관련)

명 칭	위 치
북부분원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 첨단산업로 670

[별표 2]

충청북도백곡교육도서관 분관의 명칭과 위치(제16조의2 관련)

명 칭	위 치
미원교육도서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단재로 2494-1

[별표 3]

충청북도교육문화원 분원의 명칭과 위치(제19조의2 관련)

명 칭	위 치
진천문학관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사송3길 17

[별표 4]

충청북도학생수련원 분원의 명칭과 위치(제22조의2 관련)

명 칭	위 치
제천분원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학현소야로 393
제천안전체험관	충청북도 제천시 제천북로 141
옥천분원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용방1길 79-14

[별표 5]

충청북도국제교육원 분원의 명칭과 위치(제25조의2 관련)

명 칭	위 치
충주분원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대로 50
북부분원	충청북도 제천시 죽하로 13
남부분원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양로 75
중부분원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농다리로 536-43

[별표 6]

충청북도특성화고등학교등공동실습소 명칭 및 위치(제26조 관련)

명 칭	설 치 학 교	위 치
충청북도농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청주농업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덕로 45
충청북도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청주공업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교서로 17
	충북공업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서부로 1205번길 52

[별표 7]

충청북도중원교육문화원 분원의 명칭과 위치(제37조의2 관련)

명 칭	위 치
중원교육도서관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창전길 219

[별표 8]

충청북도해양교육원 분원의 명칭과 위치(제46조의5 관련)

명 칭	위 치
제주분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괏지9길 29

[별표 9]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제48조 관련)

명 칭	위 치
보은교육도서관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삼산로 56-10
옥천교육도서관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관성로3길 7
영동교육도서관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학산영동로 1220
진천교육도서관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상산1길 11
괴산교육도서관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12길 38
증평교육도서관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154
음성교육도서관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시장로126번길 29
금왕교육도서관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응천서길27번길 33
단양교육도서관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상진12길 18

[별표 10]

학생회관의 명칭과 위치(제49조 관련)

명 칭	위 치
제천학생회관	충청북도 제천시 청전대로1길 7

[별표 11]

교직원복지회관의 명칭과 위치(제51조 관련)

명 칭	위 치
충청북도교직원복지회관	충청북도 충주시 충주호수로 990

[별표 12]

휴양소의 명칭과 위치(제53조 관련)

명 칭	위 치
영동휴양소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물한4길 8
쌍곡휴양소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쌍곡로 515



현 행	개 정 안
<p>제6조(교육국) ① 교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4. (생략)</p> <p>5. 교원(교육전문직원 포함)의</p>	<p><u>통에 관한 사항</u></p> <p><u>7. 예산의 편성·운영 및 재정 계획에 관한 사항</u></p> <p><u>8. 학교회계 예산의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u></p> <p><u>9. 법제 업무 등에 관한 사항</u></p> <p><u>10. 학교체육 및 체육행사에 관한 사항</u></p> <p><u>11.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조정</u> <u>에 관한 사항</u></p> <p><u>12. 학교보건에 관한 사항</u></p> <p><u>13.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u></p> <p><u>14. 교원단체·지방공무원단체 및 공무원 복리에 관한 사항</u></p> <p><u>15. 교권보호에 관한 사항</u></p> <p><u>16. 교육공무직원 인사·노무관리 총괄에 관한 사항</u></p> <p><u>17. 교육공무직원 지원·관리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u></p> <p><u>18.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u></p> <p><u>19. 소관 직속기관에 대한 지원과 운영지도</u></p> <p>제6조(교육국) ①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 자</p>

현행	개정안
<p><u>자격·인사·교육·복리에 관한 사항</u></p> <p>6. (생략)</p> <p>7. <u>과학 및 산업교육에 관한 사항</u></p> <p>8. (생략)</p> <p>9. <u>평생교육의 진흥</u></p> <p>10. <u>평생교육시설 및 학원의 설립·폐지 및 운영지도</u></p> <p>11. <u>학교체육 및 체육행사에 관한 사항</u></p> <p>12. <u>학교보건 관련 업무</u></p> <p>13. <u>공익법인의 설립·해산 및 운영지도</u></p> <p>14. <u>직속기관에 대한 지원과 운영지도</u></p> <p>15. ~ 18. (생략)</p> <p>19. <u>교원 단체 관련 업무</u></p> <p>20. <u>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조정</u> <u>에 관한 사항</u></p> <p>&lt;신설&gt;</p> <p>&lt;신설&gt;</p> <p>② 삭제</p>	<p><u>격·인사·교육</u></p> <p>6. (현행과 같음)</p> <p>7. <u>과학, 수학, 정보, 생태환경</u></p> <p>8. (현행과 같음)</p> <p>&lt;삭제&gt;</p> <p>&lt;삭제&gt;</p> <p>&lt;삭제&gt;</p> <p>&lt;삭제&gt;</p> <p>&lt;삭제&gt;</p> <p>14. <u>소관 직속기관</u></p> <p>15. ~ 18. (현행과 같음)</p> <p>&lt;삭제&gt;</p> <p>&lt;삭제&gt;</p> <p>21. <u>융합, 영재, 발명교육에 관한 사항</u></p> <p>22. <u>장학금 및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u></p>
<p>제7조(행정국) ① 행정국장은 다</p>	<p>제7조(행정국) ① -----</p>

현행	개정안
<p>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3. 삭제</p> <p>4. ~ 11. (생략)</p> <p>12.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의 <u>인사·교육·복리</u>에 관한 사항</p> <p>13.·14. 삭제</p> <p>15. ~ 18. (생략)</p> <p>19. 행정권한 <u>이양 및 위임</u>에 관한 사항</p> <p>20. 삭제</p> <p>21. (생략)</p> <p>22. <u>교육공무직원 지원·관리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u></p> <p>23. <u>장학금 및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u></p> <p>24. <u>학교급식에 관한 사항</u></p> <p>25. <u>지방교육행정협의회</u>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p> <p>&lt;신설&gt;</p> <p>&lt;신설&gt;</p> <p>&lt;신설&gt;</p>	<p>-----.</p> <p>4. ~ 11. (현행과 같음)</p> <p>12. ----- --- <u>인사·교육</u>---</p> <p>15. ~ 18. (현행과 같음)</p> <p>19. ----- <u>위임 및 위탁</u>----- -----</p> <p>21. (현행과 같음)</p> <p>&lt;삭제&gt;</p> <p>&lt;삭제&gt;</p> <p>&lt;삭제&gt;</p> <p>25. <u>의회 및 지방교육행정협의회</u> -----</p> <p>26. <u>평생교육의 진흥</u></p> <p>27. <u>평생교육시설 및 학원의 설립·폐지 및 운영 지도</u></p> <p>28. <u>공익법인의 설립·해산 및 운영지도</u></p>
<p>② 삭제</p> <p>제1절 <u>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u></p>	<p>제1절 <u>충청북도자연과학교육원</u></p>



현행	개정안
<p>육 진흥에 관한 <u>자료 개발·보급</u></p> <p>7.·8. 삭 제</p> <p>9. <u>인정도서 개발 및 심사에 관한 사항</u></p> <p>10. 과학, 수학, <u>발명 및 생태환경</u> 관련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p> <p>11.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u>연구원</u> 기능수행에 관한 사항</p> <p>제11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각급학교 교직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 <u>공무원</u>의 자질향상과 투철한 교직원을 확립, 국민교육에 헌신하도록 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단체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p> <p>② (생략)</p> <p>제12조(원장) (생략)</p> <p><u>&lt;신설&gt;</u></p> <p><u>&lt;신설&gt;</u></p>	<p><u>태환경교육</u> -- <u>사항</u></p> <p><u>&lt;삭제&gt;</u></p> <p>10. ----- <u>융합, 발명, 영재</u> -----</p> <p>11. ----- ----- <u>자연과학교육원</u> ----- -----</p> <p>제11조(설치) ① ----- ----- ----- <u>공무원·직원</u>----- ----- -----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2조(원장)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u>분원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분원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u></p> <p>제13조의2(분원) <u>연수원에 두는</u></p>

현행	개정안
<p>제3절 <u>충청북도중앙도서관</u></p> <p>제14조(설치) ① 법 제32조 및 「도서관법」 제27조에 따라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u>충청북도 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u>을 설치한다.</p> <p>② <u>도서관</u>은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충렬로 19에 둔다.</p> <p>제15조(관장) ① <u>도서관</u>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p> <p>② (생략)</p> <p>제16조(업무) <u>도서관장</u>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p> <p>1. ~ 6. (생략)</p> <p>7. <u>독서교육 및 도서관 운영 관련 연수에 관한 사항</u></p> <p>8.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u>도서관</u> 기능수행에 관한 사항</p> <p>제16조의2(분관) <u>도서관</u>에 두는 분관의 명칭과 위치는 <u>별표 1</u>과</p>	<p><u>분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u></p> <p>제3절 <u>충청북도백곡교육도서관</u></p> <p>제14조(설치) ① ----- ----- ----- <u>충청북도 백곡교육도서관(이하 “백곡교육도서관”이라 한다)</u>-----.</p> <p>② <u>백곡교육도서관</u>-----.</p> <p>제15조(관장) ① <u>백곡교육도서관</u>-----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6조(업무) <u>백곡교육도서관장</u>-----.</p> <p>1. ~ 6. (현행과 같음)</p> <p>7. <u>교과교육(국어·한문), 독서·인문교육, 학교도서관</u> --</p> <p>8. ----- ----- <u>백곡교육도서관</u> -----</p> <p>제16조의2(분관) <u>백곡교육도서관</u> ----- ----- <u>별표 2</u>와</p>

현행	개정안
<p>같다.</p> <p>제4절 <u>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u></p> <p>제17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교양증진, 소질계발, 정서 순화 등 감성교육에 기여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을 통하여 창의적인 학생교육문화를 창달하고자 <u>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u>(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p> <p>② (생략)</p> <p>제19조(업무) 문화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p> <p>1. (생략)</p> <p>2. <u>학생문화 축제</u>, 각종 문예활동 등을 위한 공연·전시 운영</p> <p>3. 삭제</p> <p>4. <u>평생교육 지원</u></p> <p>5. (생략)</p> <p>&lt;신설&gt;</p> <p>6. (생략)</p> <p>제19조의2(분원) 문화원에 두는 분원의 명칭과 위치는 <u>별표 2</u>와 같다.</p> <p>제20조(설치) ① 법 제32조 및 「청소년기본법」 제18조에 따라</p>	<p>--.</p> <p>제4절 <u>충청북도교육문화원</u></p> <p>제17조(설치) ① ----- ----- ----- ----- ----- ----- <u>충청북도교육문화원</u>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9조(업무) ----- -----.</p> <p>1. (현행과 같음)</p> <p>2. <u>교육문화</u> ----- - 및 -----</p> <p>&lt;삭제&gt;</p> <p>5. (현행과 같음)</p> <p>6. <u>교직원 연수에 관한 사항</u></p> <p>7. (현행 제6호와 같음)</p> <p>제19조의2(분원) ----- ----- <u>별표 3</u>과 -----</p> <p>제20조(설치) ----- -----</p>

현행	개정안
<p>라 <u>학생들의 진취적 기상을 신장하고, 인격을 도야하며, 애국 애족하는 학생상을 정립하고,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충청북도학생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u></p> <p>② (생략)</p> <p>제22조(업무) 수련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p> <p>1. ~ 3. (생략)</p> <p>&lt;신설&gt;</p> <p>4. (생략)</p> <p>제22조의2(야영장 및 휴양소) 수련원에 두는 <u>야영장 및 휴양소</u>의 명칭과 위치는 <u>별표 3과</u> 같다.</p> <p>제23조(설치) ① (생략)</p> <p>② 국제교육원은 충청북도 <u>진천군 문백면 농다리로 536-43</u>에 둔다. 다만, 국제교육원의 일부는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u>홍덕로 26</u>에 둔다.</p> <p>제25조(업무) 국제교육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p> <p>1. ~ 6. (생략)</p> <p>&lt;신설&gt;</p>	<p>--<u>수련활동 등을 통해 학생들의 발달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고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청소년 육성과 교직원의 복지증진을</u>-----</p> <p>-----</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2조(업무) -----</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u>4. 학생안전체험에 관한 사항</u></p> <p>5. (현행 제4호와 같음)</p> <p>제22조의2(분원) -----</p> <p>-----<u>분원</u>-----</p> <p>-----<u>별표 4와</u>-----</p> <p>-----.</p> <p>제23조(설치)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청주시 서원구 홍덕로 53</u>-----</p> <p>-----.</p> <p>-----.</p> <p>제25조(업무) -----</p> <p>-----.</p> <p>1. ~ 6. (현행과 같음)</p> <p><u>7. 외국어 교육 관련 교원 연수</u></p>

현행	개정안
<p>7. (생략)</p> <p>제26조(설치) ① (생략)</p> <p>② 공동실습소의 명칭과 위치는 <u>별표 7과 같다.</u></p> <p>제9절 <u>충청북도교육정보원</u></p> <p>제32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u>교원의 정보화 연수, 교육정보 자료의 개발과 활용 지원, 이러닝 지원 체제의 구축·운영 및 행정 정보 전산화의 진흥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u></p> <p>② <u>정보원은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31에 둔다.</u></p> <p>제33조(원장) <u>정보원</u>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감독한다.</p> <p>제34조(업무) <u>정보원장</u>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p> <p>&lt;신설&gt;</p> <p>&lt;신설&gt;</p> <p>&lt;신설&gt;</p>	<p><u>에 관한 사항</u></p> <p>8. (현행 제7호와 같음)</p> <p>제26조(설치)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별표 6-----.</u></p> <p>제9절 <u>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u></p> <p>제32조(설치) ① ----- - <u>교육정책 연구----- 정</u> ----- <u>보교육 -----</u> ----- <u>지원을 위</u> <u>하여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u> <u>(이하 “연구정보원”이라 한다)-----</u> --.</p> <p>② <u>연구정보원-----</u> -----.</p> <p>제33조(원장) <u>연구정보원-----</u> ----- ----- -----.</p> <p>제34조(업무) <u>연구정보원장-----</u> -----.</p> <p>1. <u>교육정책 연구에 관한 사항</u></p> <p>2. <u>현장연구 및 조사</u></p> <p>3. <u>연구학교 및 교육실습 협력</u> <u>학교 지정·운영</u></p>

현행	개정안
<p>1. ~ 3. (생략)</p> <p>2. <u>정보화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u></p> <p>3. <u>정보관련 연수 및 정보 활용 능력 신장에 관한 사항</u></p> <p>4. <u>교육정보 종합 서비스에 관한 사항</u></p> <p>5. (생략)</p> <p>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u>정보원 기능수행에 관한 사항</u></p> <p>제10절 <u>충청북도충주학생회관</u> 제35조(설치) ① <u>법 제32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교양증진, 소질 계발, 정서순화 등 전인교육에 기여하고, 지식·정보 제공으로 평생교육·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충주학생회관(이하 “충주학생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u></p> <p>② <u>충주학생회관은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대로 50에 둔다. 다만, 충주학생회관의 일부는 충청북도 충주시 국원대로 35에 둔다.</u></p> <p>제36조(관장) ① <u>충주학생회관에</u></p>	<p>5. ~ 7.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p> <p>6. <u>정보교육</u> ----- -</p> <p>7. <u>정보 관련</u> ----- -----</p> <p>4. <u>인정도서 개발·심사·심의·조정</u>-----</p> <p>8. (현행 제5호와 같음)</p> <p>9. -- <u>연구정보원</u> ----- ----- -----</p> <p>제10절 <u>충청북도중원교육문화원</u> 제35조(설치) ① <u>법 제32조 및 「도서관법」 제27조에 따라 정보·문화 교육센터로의 기능 수행 및 청소년의 교양증진, 소질 계발, 정서순화 등 문화·예술·교육에 기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중원교육문화원(이하 “중원교육문화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u></p> <p>② <u>중원교육문화원</u>----- ----- ----- <u>중원교육문화원</u>----- -----</p> <p>제36조(원장) ① <u>중원교육문화원</u></p>





현행	개정안
<p>수행에 관한 사항</p> <p>제46조의5(분원) <u>해양수련원</u>에 두는 분원의 명칭과 위치는 <u>별표 9</u>와 같다.</p> <p>제46조의8(업무) 진로교육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p> <p>1. ~ 3. (생략)</p> <p><u>&lt;신설&gt;</u></p> <p>4. ~ 8. (생략)</p> <p>제46조의11(업무) 특수교육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p> <p>1. ~ 4. (생략)</p> <p><u>&lt;신설&gt;</u></p> <p>5. (생략)</p> <p>제47조(설치) 법 제32조에 따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으로 도서관, 학생회관, <u>교직원복지회관</u>을 둔다.</p> <p>제48조(도서관) ① ~ ③ (생략)</p> <p>④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u>별표 10</u>과 같다.</p> <p>제49조(학생회관) ①·② (생략)</p>	<p>-----</p> <p>제46조의5(분원) <u>해양교육원</u>-----<u>별표 8</u>과-----.</p> <p>제46조의8(업무) -----.</p> <p>1. ~ 3. (현행과 같음)</p> <p><u>4. 진학상담 및 진학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u></p> <p>5. ~ 9. (현행 제4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p> <p>제46조의11(업무) -----.</p> <p>1. ~ 4. (현행과 같음)</p> <p><u>5.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전환교육 지원</u></p> <p><u>6. (현행 제5호와 같음)</u></p> <p>제47조(설치) ----- ----- <u>교직원복지회관, 휴양소</u>를 --.</p> <p>제48조(도서관)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u>별표 9</u>와 -----.</p> <p>제49조(학생회관) ①·② (현행과</p>

현행	개정안
<p>③ 학생회관의 명칭과 위치는 <u>별표 11</u>과 같다.</p> <p>제51조(교직원복지회관) ①·② (생략)</p> <p>③ 교직원복지회관의 명칭과 위치는 <u>별표 12</u>와 같다.</p> <p>&lt;신설&gt;</p>	<p>같음)</p> <p>③ ----- <u>별표 10</u>-----.</p> <p>제51조(교직원복지회관)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별표 11</u>과 -----.</p> <p>제53조(휴양소) ① <u>교직원의 자질 향상과 후생·복지증진을 위하여 휴양소를 둔다.</u></p> <p>② <u>휴양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관할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u></p> <p>③ <u>휴양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2와 같다.</u></p> <p><u>별표 1부터 별표 12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u></p>

# 관 계 법 령

##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2018.1.1.] [법률 제11212호, 2012.1.26 타법개정]

제32조(교육기관의 설치) 교육감은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8.2.27.] [대통령령 제28679호, 2018.2.27. 일부개정]

제6조(기구 설치의 일반요건) ① 국(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3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

② 실(室)은 업무의 성질상 국 또는 과로서는 그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한다.

③ 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조사·분석·평가와 행정개선 등에 관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관(국장은 제외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밑에 설치하며, 담당관 밑에는 과를 둘 수 없다.

④ 과(본청 및 교육지원청의 과로 한정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본청의 경우에는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정원을 3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만 설치한다.

1. 국의 소관업무(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기관의 경우에는 그 소관사무를 말한다)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수 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⑤ 본청에 설치하는 실·국과 과·담당관은 그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부교육감의 지휘·감독하에 둔다. 다만, 교육감을 직접 보좌하는 공보(公報)기능 등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실·국등 기구의 설치) ① 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 및 그 사무 분장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며, 실·국의 설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본청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부교육감 직속으로 자체 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구를 두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국의 명칭과 사무 분장은 중앙교육행정조직과 지방교육행정조직 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 ① 본청에 두는 부교육감·실장·국장·과장 및 담당관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본청에 두는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은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과·담당관 등의 설치)** 본청에 두는 과·담당관의 설치와 사무 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교육지원청 기구의 설치기준 등)** ① 교육지원청 국·과(담당관)·센터의 설치 및 국장·과장(담당관)·센터장의 사무 분장은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되, 국·과(담당관)·센터의 설치기준 및 국장·과장(담당관)·센터장의 직급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에 설치하는 국·과의 명칭은 국은 지원관으로, 과는 팀으로 각각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 영을 적용할 때 국·과로 본다.

**제12조(직속기관 등의 하부조직 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설치되는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조직과 공무원의 직급은 시·도 교육청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장의 직급, 하부조직 및 그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 또는 조례의 위임에 따른 교육규칙으로 정한다.